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7일 03시 45분



목차

목차	2
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	3
1. 민방위대상	3
편성 대상자	3
편성 제외자	3
2. 편성 의무자	3
3. 편성 제외자	3
법정 당연제외자	3

제도안내	연혁	남북방위제도비교	교육장오시는길
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	민방위훈련안내		

1. 민방위대상

👤 편성 대상자

- 편성 의무자, 편성 지원자

👤 편성 제외자

-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『법정 당연제외자』
- 읍·면·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『심의 제외자』
- 편성권자(시장·군수·구청장, 읍·면·동장)에 의한 『직권 제외자』

2. 편성 의무자

- 만 20세 ~ 만 40세 해(☒)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
 - >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
 - > (2023년 편성 의무자) 1983.1.1. ~ 2003.12.31.생
 - > (신규 편성자) 2003년생
 - > (편성 의무 해제자) 1982년생
- 학생 졸업자, 예비군 편성 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

3. 편성 제외자

👤 법정 당연제외자

근 거 : 민방위기본법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17조

구 분	제 외 대 상	신 고 자	
		사유발생	사유소멸

군인·경찰 공무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군인, 예비군, 의용소방대원 ▪ 현역병 입영대상자 ▪ 보충역 입영대상자(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, 공중보건요원,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) 	직권처리 (본인)	본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찰·소방·교정·보호직공무원, 군무원, 청원경찰, 등대원,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	직장의 장 (본인)	직장의 장 (본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▪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*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	본인	본인
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(학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*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,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▪ 경찰대학, 한국과학기술대학(KAIST) ▪ 대학원, 대학원대학(석사과정에 한함) *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▪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	학교의 장 (본인)	학교의 장 (본인)
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	시설의 장 (본인)	시설의 장 (본인)
신심장애인 만성허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·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▪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서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	본인	본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	직권처리 (본인)	본인

Yeosu Web Contents

